

2026년 4월 1일

발달장애서비스국 중요 공지 사항:

# 행동 프로그램 및 인력 배치를 활용한 임시간호 서비스 – 업데이트된 청구 지침

D-2026-요율 개편-003

## 알아두어야 할 사항

본 지침은 행동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임시간호(respite)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새로운 청구 규정을 설명합니다. 이러한 업데이트는 요율 개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2026년 5월 1일부터:

- 행동 프로그램 또는 인력 배치를 포함하는 임시간호 서비스는 기본 코드로 862를 사용하여 청구해야 합니다.
- 서비스 제공자는 각 직원의 자격에 따라 올바른 하위 코드를 포함해야 합니다.
- 청구는 시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
- 해당되는 경우, 감독 직원도 동일한 서비스 시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필요성은 6개월마다 검토되어야 합니다. 이는 개인의 개별 프로그램 계획(IPP)에 기록되어야 합니다.

## 변경되는 사항

본 지침은 개인이나 가족이 서비스를 받는 방식에는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. 본 지침은 행동 프로그램이나 인력 배치를 포함한 임시간호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 지역센터에 청구하는 방식만 변경합니다.

## 질문이 있으신가요?

본 지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개인이나 가족은 담당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문의 사항이 있는 서비스 제공자는 등록되어 있는(vendoring) 지역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 지역 센터는 문의 사항을 [ratesquestions@dds.ca.gov](mailto:ratesquestions@dds.ca.gov)로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

## 자세히 알아보기

요율 개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, 당 부서의 [요율 개편 웹페이지](#). ([www.dds.ca.gov/rc/vendor-provider/rate-reform](http://www.dds.ca.gov/rc/vendor-provider/rate-reform))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